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2878호 2023. 1. 6.(금)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798호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5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1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호 2023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25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호 진안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6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호 진안천 폐천부지 고시 28
- 전라북도 고시 제2023-5호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치인가 고시 29
- 전라북도 고시 제202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9호 전라북도 지적제조사사업 변경고시(순창군) 38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호 갈수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39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호 갈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4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2호 갈수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4호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고시 45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호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998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공고 6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6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3호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65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사항 공고 77

지시사항

- 2022. 12. 30.(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78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4호 도시계획시설(소로1-117호선외3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80
- 군산시 고시 제2023-5호 도시계획시설(소로2-577호선외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84
- 군산시 공고 제2023-8호 도시계획시설(중로3-152호선외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87
- 김제시 고시 제2022-132호 성당양지지구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89
- 김제시 공고 제2023-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4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92
- 김제시 공고 제2023-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구간 송유관 이설공사) 공사완료 공고 96
- 완주군 고시 제2023-2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축구메카)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97
- 고창군 고시 제2023-1호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98

기 타

-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2-2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 송달 101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3. 1. 6.

전라북도 훈령 제1798호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라북도에 소속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전라북도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2.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전라북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4.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현업업무자로 구분되는 공무원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의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및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의 의무)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산업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

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2.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도지사 또는 관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른다.

제6조(안전보건관리 예방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 2. 안전보건활동 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 3. 안전보건관리체계·인원 및 역할
-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내역 및 실행결과의 보고
- 5.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개선계획 및 소요예산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도지사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사업장 안전보건책임자)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안전보건령”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업장 안전보건책임자(이하 “사업장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사업장책임자는 제7조제2항의 업무 중 제2호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용부서의 장 또는 현장 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

상 유무의 확인

-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협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장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훈령에서 정한 업무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훈령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건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2.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보건의)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령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산업보건의는 안전보건령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장(이하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근로자가 총 인원이 10명 이상인 분원 또는 지소에도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절차, 업무 및 교육 등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

제14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에 대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관할 노동관서에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직무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연구실을 포함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1명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명
4.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연구실 운영 사업장의 연구활동 근로자 4명

④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

1. 관리책임자: 자치행정국장
2. 주관부서 과장: 총무과장
3.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연구실 운영 사업장의 부서장 4명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산업보건의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지정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전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6조(위원회 임기) ①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자체 정례조회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전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전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위원회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보존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교육계획의 수립)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보건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22조(안전보건교육의 종류) ① 안전·보건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법적으로 선임 또는 지정되는 인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

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근로자 교육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기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채용 시 교육: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4. 특별교육: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③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이 이수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날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날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3.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날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4.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가. 신규교육: 18시간 이상, 지정 후 6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12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④ 그 밖에 연구활동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23조(교육실시 방법) ① 사업장 자체 교육은 안전보건규칙 제26조제3항에 명시된 사람만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법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따른다.

제24조(교육의 기록·보존) 관리감독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담당자,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이 기록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5조(안전보건 점검)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며, 해당 사업장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26조(안전인증 기계·기구의 사용)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령 제74조제1항에 명시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사용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제27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보건령 제78조제1항 각 호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안전보건규칙 제126조에 따른다.

②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작성 후 검사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한다.

③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합격 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에 부착한다.

제28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령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는 방호 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관리하며, 방호조치가 해체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의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알린다.

제29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 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이유로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안전·보건 표지)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설치·부착장소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순찰)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와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순찰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안전기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87조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제34조(근로자의 건강진단)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에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실시시키는 안전보건규칙 제197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진

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 ④ 관리감독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안 된다.

제35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 ②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며 보호구별 지정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는 안 된다.
- ③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제36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①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안전보건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경고표지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경고표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제37조(근골격계 질환예방) ①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작업 또는 무리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한다.

- ② 조사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야 하며,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도지사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

을 때에는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복귀시킨다.

제39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연구실 관리

제40조(정밀안전진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시설·장비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안전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안전법 제19조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명시된 위험성평가로 대체하여 실행한다.

제42조(건강검진) 연구실안전법 제21조의 건강검진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명시된 건강진단으로 대체하여 실행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43조(위험성평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실행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4조(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3. 위험성평가는 대상 작업과 관련된 관리감독자, 근로자,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기법은 작업장 상황과 작업특성에 적합한 기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45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46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1.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3.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4. 작업절차서 정비, 안전표지 부착 등의 관리적 대책
 5.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한다.
- ③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 ④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9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7조(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경우 관리감독

독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로 인한 작업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재해현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73조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④ 재해 발생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4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제49조(산업재해 기록 등)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기록·보존한다.

제10장 보칙

제50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51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전라북도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2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35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사방사업 시행 후 5년경과)
2.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의 사방지의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참조
3. 사방지 지정해제 도면 : 토지소재지 각 시·군별 산림업무담당부서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비치
4. 사방지 지정해제 시·군별 내역

시군	대상지 내역			사업별			비고
	필지수	면적(㎡)	입목(㎡)	사업종	필지수	면적(㎡)	
계	359필지	160,294	-	산지	-	-	
				계류	120	45,545	
				사방댐	220	99,237	
				기타	19	15,512	
전주시	3필지	2,320	-	산지	-	-	
				계류	-	-	
				사방댐	3	2,320	
				기타	-	-	
군산시	1필지	3,411	-	산지	-	-	
				계류	-	-	
				사방댐	1	3,411	
				기타	-	-	
익산시	14필지	8,329	-	산지	-	-	
				계류	12	6,157	
				사방댐	2	2,172	
				기타	-	-	
정읍시	43필지	16,374	-	산지	-	-	
				계류	27	7,236	
				사방댐	16	9,138	
				기타	-	-	

남원시	51필지	27,987	-	산지	-	-	
				계류	15	4,412	
				사방댐	36	23,575	
				기타	-	-	
김제시	11필지	1,331	-	산지	-	-	
				계류	-	-	
				사방댐	11	1,331	
				기타	-	-	
완주군	39필지	16,786	-	산지	-	-	
				계류	18	6,251	
				사방댐	21	10,535	
				기타	-	-	
진안군	41필지	13,637	-	산지	-	-	
				계류	9	2,653	
				사방댐	32	10,984	
				기타	-	-	
무주군	30필지	22,013	-	산지	-	-	기타 :유역관리
				계류	2	1,239	
				사방댐	13	5,814	
				기타	15	14,960	
장수군	38필지	16,107	-	산지	-	-	
				계류	12	4,058	
				사방댐	26	12,049	
				기타	-	-	
임실군	40필지	15,941	-	산지	-	-	
				계류	20	6,360	
				사방댐	20	9,581	
				기타	-	-	
순창군	32필지	6,595	-	산지	-	-	
				계류	-	-	
				사방댐	32	6,595	
				기타	-	-	
고창군	5필지	7,179	-	산지	-	-	
				계류	5	7,179	
				사방댐	-	-	
				기타	-	-	
부안군	11필지	2,284	-	산지	-	-	기타 :해안침식
				계류	-	-	
				사방댐	7	1,732	
				기타	4	552	

붙임 사방지의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1부. 끝.

사방지 지정 해제 대상지 내역

산림소계지			지번	지목	지적 (㎡)	사 방 지 지 정			사방지 해제	
시군	읍면동	리				면적 (㎡)	사방 종류	고시번호 및 일자	면적 (㎡)	연도
총 합			359필지		62,581,740	160,294		제2017-274 2017.12.29	160,294	
전주	완산	용복	산197-7	임	31,242	1,201	사방댐	"	1,201	2022
전주	완산	용복	산193	임	2,500	61	사방댐	"	61	2022
전주	완산	용복	산197-7	임	31,242	1,058	사방댐	"	1,058	2022
합계			3필지		64,984	2,320			2,320	
군산	소룡		산120	임	835,751	3,411	사방댐	"	3,411	2022
합계			1필지		835,751	3,411			3,411	
익산	여산	호산	161-1	천	1,607	98	계류	"	98	2022
익산	여산	호산	733	천	3,803	415	계류	"	415	2022
익산	여산	호산	산4	임	284,152	1,455	계류	"	1,455	2022
익산	여산	호산	730	천	5,605	445	계류	"	445	2022
익산	여산	호산	산7-1	임	4,573	235	계류	"	235	2022
익산	여산	호산	71-4	전	218	95	계류	"	95	2022
익산	낭산	석천	산80	임	95,702	2,149	사방댐	"	2,149	2022
익산	낭산	석천	12-4	답	1,388	23	사방댐	"	23	2022
익산	낭산	석천	산80	임	95,702	1,586	계류	"	1,586	2022
익산	합라	함열	778-1	구	3,502	416	계류	"	416	2022
익산	합라	함열	654-4	전	3,719	409	계류	"	409	2022
익산	합라	함열	682	전	1,825	31	계류	"	31	2022
익산	합라	신대	산59-11	임	1,821	820	계류	"	820	2022
익산	합라	신대	산63-5	임	6,447	152	계류	"	152	2022
합계			14필지		510,064	8,329			8,329	
정읍	쌍암		791	임	6,321	32	계류	"	32	2022
정읍	쌍암		1070	구	40,831	1,023	계류	"	1,023	2022
정읍	쌍암		787	전	122	31	계류	"	31	2022
정읍	쌍암		788	대	476	129	계류	"	129	2022
정읍	쌍암		782	답	493	28	계류	"	28	2022
정읍	쌍암		781-1	답	350	28	계류	"	28	2022
정읍	쌍암		1040	도	7,447	15	계류	"	15	2022
정읍	쌍암		775-1	전	245	80	계류	"	80	2022
정읍	쌍암		883	전	330	25	계류	"	25	2022
정읍	쌍암		1095	도	6,316	30	계류	"	30	2022
정읍	쌍암		889	전	750	202	계류	"	202	2022
정읍	쌍암		1070	구	40,831	838	계류	"	838	2022
정읍	흑암		635	도	3,935	455	계류	"	455	2022
정읍	흑암		617	구	42,695	286	계류	"	286	2022
정읍	흑암		산57	임	14,975	248	계류	"	248	2022
정읍	흑암		578-3	대	88	58	계류	"	58	2022
정읍	흑암		산67	임	269,256	1,657	계류	"	1,657	2022
정읍	흑암		산67	임	269,256	2,242	사방댐	"	2,242	2022
정읍	덕천	하학	728	임	3,075	366	계류	"	366	2022

정읍	덕천	하학	784-7	구	516	299	계류	"	299	2022
정읍	덕천	하학	730	전	1,076	111	계류	"	111	2022
정읍	덕천	하학	731	전	602	30	계류	"	30	2022
정읍	북면	북홍	906	도	1,002	64	계류	"	64	2022
정읍	북면	북홍	898-9	구	4,036	915	계류	"	915	2022
정읍	북면	북홍	897	도	565	83	계류	"	83	2022
정읍	북면	북홍	20	답	1,094	27	계류	"	27	2022
정읍	북면	북홍	899	도	674	66	계류	"	66	2022
정읍	북면	북홍	산32	임	30,347	110	계류	"	110	2022
정읍	북	보림	1381	구	5,366	1,304	사방댐	"	1,304	2022
정읍	북	보림	산11	임	9,732	945	사방댐	"	945	2022
정읍	북	보림	산7	임	18,618	1,426	사방댐	"	1,426	2022
정읍	북	보림	산14	임	10,261	502	사방댐	"	502	2022
정읍	북	보림	산194	임	909	294	사방댐	"	294	2022
정읍	북	보림	산194-1	구	463	21	사방댐	"	21	2022
정읍	북	보림	산194-2	임	31,355	246	사방댐	"	246	2022
정읍	북	보림	산16	임	16,503	219	사방댐	"	219	2022
정읍	북	보림	59-1	구	164	30	사방댐	"	30	2022
정읍	과교		산13-2	임	1,488	200	사방댐	"	200	2022
정읍	과교		산9	전	26,975	196	사방댐	"	196	2022
정읍	과교		228	전	562	33	사방댐	"	33	2022
정읍	과교		산13-7	임	12,353	1,370	사방댐	"	1,370	2022
정읍	과교		산10	임	15,669	34	사방댐	"	34	2022
정읍	과교		산13-1	임	1,488	76	사방댐	"	76	2022
합계			43필지		899,610	16,374			16,374	
남원	수지	고평	543-1	답	700	43	계류	"	43	2022
남원	수지	고평	1380	도	631	28	계류	"	28	2022
남원	수지	고평	1381	구	17,309	619	계류	"	619	2022
남원	수지	고평	560	답	202	67	계류	"	67	2022
남원	수지	고평	559	임	4,265	327	계류	"	327	2022
남원	대강	평촌	산68	임	9,917	2,178	사방댐	"	2,178	2022
남원	대강	평촌	산69-2	임	3,492	284	사방댐	"	284	2022
남원	대강	송대	300-3	임	1,496	462	사방댐	"	462	2022
남원	대강	송대	산87	임	19,835	875	사방댐	"	875	2022
남원	대강	송대	300-2	임	878	93	사방댐	"	93	2022
남원	대강	송대	산34-1	임	30,545	513	사방댐	"	513	2022
남원	보절	신과	산60-2	임	5,690	243	사방댐	"	243	2022
남원	보절	신과	산61	임	3,967	347	사방댐	"	347	2022
남원	보절	신과	산23-2	임	20,250	1,124	사방댐	"	1,124	2022
남원	보절	신과	산23	목	55,748	2,718	사방댐	"	2,718	2022
남원	산내	장항	산42	임	64,315	654	사방댐	"	654	2022
남원	산동	대기	1027-207	천	242,680	75	사방댐	"	75	2022
남원	산동	대기	산58-3	임	1,179	61	사방댐	"	61	2022
남원	산동	대기	산58	임	7,206	1,077	사방댐	"	1,077	2022
남원	산동	대기	산57	임	6,041	142	사방댐	"	142	2022

남원	산동	대기	산56-1	도	1,703	139	사방댐	"	139	2022
남원	산동	대기	404-4	임	363	107	사방댐	"	107	2022
남원	주천	배덕	산144-1	목	23,928	686	사방댐	"	686	2022
남원	주천	배덕	산135-4	목	3,588	290	사방댐	"	290	2022
남원	주천	배덕	산135-3	임	13,802	677	사방댐	"	677	2022
남원	주천	배덕	산144	임	10,405	1,293	사방댐	"	1,293	2022
남원	운봉	덕산	산26-19	임	6,879	205	사방댐	"	205	2022
남원	운봉	덕산	산23	임	64,286	308	사방댐	"	308	2022
남원	운봉	덕산	산26-1	임	28,670	1,248	사방댐	"	1,248	2022
남원	식정		산31-1	임	8,951	1,446	사방댐	"	1,446	2022
남원	식정		6-49	임	532	115	사방댐	"	115	2022
남원	식정		산32	임	23,599	941	사방댐	"	941	2022
남원	식정		산23	임	22,087	1,282	사방댐	"	1,282	2022
남원	식정		산44-2	임	5,896	264	계류	"	264	2022
남원	식정		산44	임	16,776	1,404	계류	"	1,404	2022
남원	내척		666-100	임	1,655	224	사방댐	"	224	2022
남원	내척		-			38	사방댐	"	38	2022
남원	내척		산101-1	임	58,726	1,274	사방댐	"	1,274	2022
남원	대강	강석	산26	임	15,471	401	사방댐	"	401	2022
남원	대강	강석	산25	임	25,785	898	사방댐	"	898	2022
남원	갈치		산79-5	임	1,689	77	사방댐	"	77	2022
남원	갈치		산79-6	구	4,002	17	사방댐	"	17	2022
남원	갈치		산79	임	86,067	1,063	사방댐	"	1,063	2022
남원	갈치		442-30	구	317	91	계류	"	91	2022
남원	갈치		산76	임	7,522	198	계류	"	198	2022
남원	갈치		산75	임	11,802	668	계류	"	668	2022
남원	갈치		산121	구	198	91	계류	"	91	2022
남원	송동	송기	산40	임	120,908	194	계류	"	194	2022
남원	송동	송기	647	도	3,650	107	계류	"	107	2022
남원	송동	송기	572-39	구	872	278	계류	"	278	2022
남원	송동	송기	67	담	2,945	33	계류	"	33	2022
합계			51필지		1,069,421	27,987			27,987	
김제	금산	금산	79-7	천	621	270	사방댐	"	270	2022
김제	금산	금산	79-6	임	4,114	226	사방댐	"	226	2022
김제	금산	금산	79-8	임	2,867	127	사방댐	"	127	2022
김제	금산	금산	482-8	원	1,961	23	사방댐	"	23	2022
김제	금산	금산	482-9	천	327	327	사방댐	"	327	2022
김제	금산	금산	482-10	원	159	146	사방댐	"	146	2022
김제	금산	금산	112	임	10,912	58	사방댐	"	58	2022
김제	금산	금산	482-11	원	41	28	사방댐	"	28	2022
김제	금산	금산	482-12	원	493	8	사방댐	"	8	2022
김제	금산	금산	482-14	원	605	32	사방댐	"	32	2022
김제	금산	금산	482-13	천	903	86	사방댐	"	86	2022
합계			11필지		23,003	1,331			1,331	
완주	고산	오산	산43-1	임	6773210	1360	사방댐	"	1360	2022

완주	고산	오산	산43-1	임	6773210	1120	사방댐	"	1120	2022
완주	고산	성재	산203	구	694	129	사방댐	"	129	2022
완주	고산	성재	814-1	임	17,786	1,583	사방댐	"	1,583	2022
완주	고산	성재	833	구	3,281	208	사방댐	"	208	2022
완주	고산	성재	814-1	임	17786	2265	사방댐	"	2265	2022
완주	화산	운산	산146	임	141223	258	계류	"	258	2022
완주	화산	운산	851	구	16132	520	계류	"	520	2022
완주	화산	운산	7	임	1544	276	계류	"	276	2022
완주	화산	운산	산149	임	2380	475	계류	"	475	2022
완주	화산	운산	산147	임	89554	775	계류	"	775	2022
완주	화산	운산	1-1	임	8658	93	계류	"	93	2022
완주	운주	산북	994	구	1,061	84	사방댐	"	84	2022
완주	운주	산북	-			488	사방댐	"	488	2022
완주	운주	산북	산11	임	255,505	1,525	사방댐	"	1,525	2022
완주	상관	의암	41	전	2823.1532	202	계류	"	202	2022
완주	상관	의암	42	전	311	76	계류	"	76	2022
완주	상관	의암	800	구	26486	899	계류	"	899	2022
완주	상관	의암	44-1	전	1706	191	계류	"	191	2022
완주	상관	의암	47	전	1322	359	계류	"	359	2022
완주	상관	의암	3-2	전	843	77	계류	"	77	2022
완주	상관	의암	산167-1	임	3868	263	계류	"	263	2022
완주	상관	의암	4	전	1349	121	계류	"	121	2022
완주	상관	의암	산167-2	임	249223	455	계류	"	455	2022
완주	상관	신리	769-3	대	277	108	계류	"	108	2022
완주	상관	신리	산192-4	임	24970	693	계류	"	693	2022
완주	상관	신리	769-4	전	10140	410	계류	"	410	2022
완주	비봉	백도	1258	구	18,478	499	사방댐	"	499	2022
완주	비봉	백도	1217	전	1,514	58	사방댐	"	58	2022
완주	비봉	백도	1216	전	2106	100	사방댐	"	100	2022
완주	비봉	백도	1215	전	545	120	사방댐	"	120	2022
완주	비봉	백도	1214	전	218	35	사방댐	"	35	2022
완주	비봉	백도	1213	전	433	145	사방댐	"	145	2022
완주	비봉	백도	산33	임	191,306	295	사방댐	"	295	2022
완주	비봉	백도	1212	전	139	69	사방댐	"	69	2022
완주	비봉	백도	1211	전	225	99	사방댐	"	99	2022
완주	비봉	소농	756-118	하천	3,006	98	사방댐	"	98	2022
완주	비봉	소농	산122-3	임	5,515	200	사방댐	"	200	2022
완주	비봉	소농	627	전	519	55	사방댐	"	55	2022
합계			39필지		14,649,346	16,786			16,786	
진안	진안	가막	888	천	41553	435	계류	"	435	2022
진안	진안	가막	538	전	1207	18	계류	"	18	2022
진안	진안	가막	552	대	403	16	계류	"	16	2022
진안	진안	가막	산44	임	264970	537	계류	"	537	2022
진안	진안	가막	587-1	임	3104	49	계류	"	49	2022
진안	진안	가막	551	대	185	21	계류	"	21	2022

진안	진안	가막	553	임	298	72	계류	"	72	2022
진안	진안	가막	산78-1	임	5686	660	사방댐	"	660	2022
진안	진안	가막	산112	천	225	30	사방댐	"	30	2022
진안	진안	가막	산78-7	임	11223	307	사방댐	"	307	2022
진안	진안	가막	799	전	1689	493	사방댐	"	493	2022
진안	진안	가막	888	천	10862	409	사방댐	"	409	2022
진안	진안	가막	800	답	506	79	사방댐	"	79	2022
진안	진안	가막	산80	임	36694	121	사방댐	"	121	2022
진안	부귀	오룡	산153	임	339526	1008	사방댐	"	1008	2022
진안	부귀	세동	산114-1	도	9847	27	사방댐	"	27	2022
진안	부귀	세동	산114-2	임	17969	562	사방댐	"	562	2022
진안	백운	남계	975	천	2664.6	807	계류	"	807	2022
진안	백운	남계	976	천	1916	698	계류	"	698	2022
진안	백운	신암	산1	임	8,007,818	1060	사방댐	"	1060	2022
진안	주천	신양	283-1	임	2307	242	사방댐	"	242	2022
진안	주천	신양	산43-5	임	32217	178	사방댐	"	178	2022
진안	주천	신양	972	구	8996	565	사방댐	"	565	2022
진안	주천	신양	산53-1	임	2281	421	사방댐	"	421	2022
진안	주천	신양	348-1	답	562	15	사방댐	"	15	2022
진안	주천	신양	345	전	1408	196	사방댐	"	196	2022
진안	주천	신양	산51-1	임	2678	574	사방댐	"	574	2022
진안	주천	신양	346	전	433	101	사방댐	"	101	2022
진안	안천	노성	1578	천	56,807	156	사방댐	"	156	2022
진안	안천	노성	산57-14	임	10,533	580	사방댐	"	580	2022
진안	안천	노성	산57-1	임	170,611	704	사방댐	"	704	2022
진안	안천	노성	산145	천	50	63	사방댐	"	63	2022
진안	동향	성산	1018	구	5781	420	사방댐	"	420	2022
진안	동향	성산	866-1	답	674	41	사방댐	"	41	2022
진안	동향	성산	953	전	1496	167	사방댐	"	167	2022
진안	동향	성산	955	임	575	82	사방댐	"	82	2022
진안	동향	성산	산179	천	893	345	사방댐	"	345	2022
진안	동향	성산	산126	임	58106	95	사방댐	"	95	2022
진안	동향	성산	산128	임	81322	893	사방댐	"	893	2022
진안	진안	오천	산165-5	임	142	36	사방댐	"	36	2022
진안	진안	오천	산151	임	295073	354	사방댐	"	354	2022
합계			41필지		9,491,291	13,637			13,637	
무주	무풍	증산	산13-1	임	395,747	1,332	기타	"	1,332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86	구	20,991	744	기타	"	744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23	임	69,223	5,978	기타	"	5,978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13-1	임	395,747	996	기타	"	996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21-1	임	32,529	839	기타	"	839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21-2	임	66,843	42	기타	"	42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86	구	20,991	584	기타	"	584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23	임	69,223	2,911	기타	"	2,911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29	임	65,454	318	기타	"	318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23	임	69,223	297	기타	"	297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35-1	임	12,694	117	기타	"	117	2022
무주	무풍	증산	산34-3	임	12,992	69	기타	"	69	2022
무주	무풍	지성	산48-1	임	114744	235	사방댐	"	235	2022
무주	무풍	지성	산49-1	임	61582	1121	사방댐	"	1121	2022
무주	무풍	지성	산49-1	임	61582	1104	계류	"	1104	2022
무주	무풍	지성	119	답	205	135	계류	"	135	2022
무주	무풍	은산	산83	임	20634	845	사방댐	"	845	2022
무주	무풍	은산	954	답	1064	190	사방댐	"	190	2022
무주	무풍	은산	1506	도	1289	10	사방댐	"	10	2022
무주	무풍	은산	산154	도	413	7	사방댐	"	7	2022
무주	무풍	은산	산82-2	임	99037	71	사방댐	"	71	2022
무주	무풍	은산	산151	도	1,570	63	기타	"	63	2022
무주	무풍	은산	산38-1	임	49,764	245	기타	"	245	2022
무주	무풍	은산	산33	임	27,372	425	기타	"	425	2022
무주	설천	대불	산30	임	304498	275	사방댐	"	275	2022
무주	설천	대불	1161	천	205434	1326	사방댐	"	1326	2022
무주	무주	내도	2214	구	2036	362	사방댐	"	362	2022
무주	무주	내도	1526	답	390	177	사방댐	"	177	2022
무주	무주	내도	산117	임	511134	1141	사방댐	"	1141	2022
무주	무주	내도	1524	임	215	54	사방댐	"	54	2022
합계			30필지		2,694,620	22,013			22,013	
장수	장수	덕산	98	답	1157	80	계류	"	80	2022
장수	장수	덕산	99	답	221	81	계류	"	81	2022
장수	장수	덕산	784	하	173379	407	계류	"	407	2022
장수	장수	덕산	산11	임	242806	139	계류	"	139	2022
장수	장수	송천	1803-22	진	16839	850	사방댐	"	850	2022
장수	장수	송천	산116-25	임	56441	17	사방댐	"	17	2022
장수	장수	송천	산116-24	임	183255	24	사방댐	"	24	2022
장수	장수	노하	산43-2	도	268	47	계류	"	47	2022
장수	장수	노하	산43	임	12779	14	계류	"	14	2022
장수	장수	노하	산41	임		698	계류	"	698	2022
장수	산서	사계	산16	임	28349	687	사방댐	"	687	2022
장수	산서	건지	974	구	5,387	1,470	계류	"	1,470	2022
장수	친천	삼고	산111-3	임	225421	1698	사방댐	"	1698	2022
장수	장계	금곡	산41-2	임	59148	1072	사방댐	"	1072	2022
장수	장계	명덕	산154-1	임	9,396,000	967	계류	"	967	2022
장수	장계	명덕	산154-1	임	9,396,000	991	사방댐	"	991	2022
장수	장계	명덕	산154-1	임	9,396,000	1967	사방댐	"	1967	2022
장수	계남	장안	863-1	답	4288	23	사방댐	"	23	2022
장수	계남	장안	1067	구	1494	105	사방댐	"	105	2022
장수	계남	장안	산52-1	임	111769	767	사방댐	"	767	2022
장수	계남	장안	산123	구	893	184	사방댐	"	184	2022
장수	계남	장안	1068	구	552	174	사방댐	"	174	2022
장수	변암	사암	산166	임	21223	360	사방댐	"	360	2022

장수	번암	사암	180-2	답	99	82	사방댐	"	82	2022
장수	번암	사암	1312	천	10127	1318	사방댐	"	1318	2022
장수	번암	사암	179	천	69	24	사방댐	"	24	2022
장수	번암	사암	177	답	1868	223	사방댐	"	223	2022
장수	번암	사암	산137-1	임	68926	55	사방댐	"	55	2022
장수	번암	사암	산165-1	임	229388	33	사방댐	"	33	2022
장수	번암	논곡	741	답	139	59	계류	"	59	2022
장수	번암	논곡	742	답	618	83	계류	"	83	2022
장수	번암	논곡	1055	구	4584	13	계류	"	13	2022
장수	번암	죽산	857	하	203159	950	사방댐	"	950	2022
장수	번암	죽산	749	대	724	29	사방댐	"	29	2022
장수	번암	죽산	산96	임	61786	49	사방댐	"	49	2022
장수	번암	죽산	743-1	전	119	46	사방댐	"	46	2022
장수	번암	죽산	743-2	임	754	74	사방댐	"	74	2022
장수	번암	죽산	산97	임	62083	247	사방댐	"	247	2022
합계			38필지		29,978,112	16,107			16,107	
임실	임실	두만	766	임	30	24	계류	"	24	2022
임실	임실	두만	816	도	1636	82	계류	"	82	2022
임실	임실	두만	778-36	구	11426	904	계류	"	904	2022
임실	임실	두만	758	전	922	46	계류	"	46	2022
임실	임실	두만	760	전	1983	24	계류	"	24	2022
임실	임실	두만	757	전	3203	26	계류	"	26	2022
임실	임실	두곡	447-4	임	568	421	사방댐	"	421	2022
임실	임실	두곡	447-6	임	142	76	사방댐	"	76	2022
임실	임실	두곡	산91-3	임	499732	1561	사방댐	"	1561	2022
임실	임실	두곡	447-5	임	2780	563	사방댐	"	563	2022
임실	오수	균평	751-8	도	1621	5	사방댐	"	5	2022
임실	오수	균평	산190	임	87768	1567	사방댐	"	1567	2022
임실	성수	왕방	산58	임	314599	1800	사방댐	"	1800	2022
임실	성수	왕방	798	천	156147	145	사방댐	"	145	2022
임실	성수	왕방	454	임	1831	190	사방댐	"	190	2022
임실	성수	삼봉	932	천	35547	802	사방댐	"	802	2022
임실	성수	삼봉	72	전	133	25	사방댐	"	25	2022
임실	성수	삼봉	66	임	112	80	사방댐	"	80	2022
임실	성수	삼봉	산142	임	5950	200	사방댐	"	200	2022
임실	성수	봉강	산139	임	51967	920	사방댐	"	920	2022
임실	덕치	가곡	491	전	1,739	66	계류	"	66	2022
임실	덕치	가곡	916-7	구	9,850	1,502	계류	"	1,502	2022
임실	덕치	가곡	475	답	1,309	111	계류	"	111	2022
임실	오수	신기	411	도	5573	15	사방댐	"	15	2022
임실	오수	신기	산24	임	2975	295	사방댐	"	295	2022
임실	오수	신기	산23	임	57521	295	사방댐	"	295	2022
임실	오수	신기	382	전	453	118	사방댐	"	118	2022
임실	오수	신기	383	전	737	115	사방댐	"	115	2022
임실	오수	신기	384-1	전	10986	388	사방댐	"	388	2022

임실	오수	둔덕	810	도	3573	30	계류	"	30	2022
임실	오수	둔덕	734	담	1236	97	계류	"	97	2022
임실	오수	둔덕	733	담	1484	44	계류	"	44	2022
임실	오수	둔덕	735	전	893	55	계류	"	55	2022
임실	오수	둔덕	736	대	906	171	계류	"	171	2022
임실	오수	둔덕	800-19	구	1400	296	계류	"	296	2022
임실	강진	용수	630-2	도	1,719	33	계류	"	33	2022
임실	강진	용수	산34	임	33,661	126	계류	"	126	2022
임실	강진	용수	629	구	8,334	1,756	계류	"	1,756	2022
임실	강진	용수	산123-1	임	20,643	320	계류	"	320	2022
임실	강진	용수	산125	임	73,587	647	계류	"	647	2022
합계			40필지		1,416,676	15,941			15,941	
순창	구림	운북	111-1	대	569	127	사방댐	"	127	2022
순창	구림	운북	494	도	1,091	40	사방댐	"	40	2022
순창	구림	운북	115	대	364	81	사방댐	"	81	2022
순창	구림	운북	산89	임	92,231	624	사방댐	"	624	2022
순창	구림	운북	117	전	1,782	105	사방댐	"	105	2022
순창	구림	운북	118	전	430	92	사방댐	"	92	2022
순창	구림	운북	120	전	820	84	사방댐	"	84	2022
순창	구림	운북	490	구	24,641	750	사방댐	"	750	2022
순창	구림	운북	493	도	972	237	사방댐	"	237	2022
순창	구림	운북	116	전	3,174	39	사방댐	"	39	2022
순창	구림	금창	산27	목	14,214	34	사방댐	"	34	2022
순창	구림	금창	566	전	387	28	사방댐	"	28	2022
순창	구림	금창	산27-1	임	20,892	22	사방댐	"	22	2022
순창	구림	금창	565	전	238	141	사방댐	"	141	2022
순창	구림	금창	564	대	311	192	사방댐	"	192	2022
순창	구림	금창	671	도	294	27	사방댐	"	27	2022
순창	구림	금창	산19	임	16,066	117	사방댐	"	117	2022
순창	구림	금창	555	전	476	59	사방댐	"	59	2022
순창	구림	금창	677	도	212	87	사방댐	"	87	2022
순창	구림	금창	674	구	48,043	731	사방댐	"	731	2022
순창	쌍치	종곡	427	도	23	20	사방댐	"	20	2022
순창	쌍치	종곡	379	담	658	34	사방댐	"	34	2022
순창	쌍치	종곡	387	담	853	124	사방댐	"	124	2022
순창	쌍치	종곡	428	도	407	35	사방댐	"	35	2022
순창	쌍치	종곡	산82-1	임	64,959	138	사방댐	"	138	2022
순창	쌍치	종곡	421-3	구	5,563	1,620	사방댐	"	1,620	2022
순창	쌍치	종곡	391	담	1,018	664	사방댐	"	664	2022
순창	쌍치	종곡	390	전	2,767	115	사방댐	"	115	2022
순창	쌍치	종곡	429	도	436	116	사방댐	"	116	2022
순창	쌍치	종곡	산76	임	4,562	39	사방댐	"	39	2022
순창	쌍치	종곡	376	전	486	58	사방댐	"	58	2022
순창	쌍치	종곡	426	도	60	15	사방댐	"	15	2022
합계			32필지		308,999	6,595			6,595	

고창	성송	계당	산88	임	8,628	94	계류	"	94	2022
고창	성송	계당	산93-2	임	40,264	4,521	계류	"	4,521	2022
고창	성송	계당	산99	임	8,529	335	계류	"	335	2022
고창	성송	계당	산98	임	16,364	1,990	계류	"	1,990	2022
고창	성송	계당	신94	임	4,760	239	계류	"	239	2022
합계			5필지		78,545	7,179			7,179	
부안	변산	도청	569-6	잡	1,710	32	기타	"	32	2022
부안	변산	도청	569-5	잡	185	77	기타	"	77	2022
부안	변산	도청	569-8	잡	483	197	기타	"	197	2022
부안	변산	도청	산55-5	임	31,691	246	기타	"	246	2022
부안	상서	가오	1035-112	구	1,082.5	431	사방댐	"	431	2022
부안	상서	가오	산62	구	170.0	75	사방댐	"	75	2022
부안	상서	가오	산5-2	임	6,446.0	15	사방댐	"	15	2022
부안	상서	가오	870-77	임	509,553.7	803	사방댐	"	803	2022
부안	상서	가오	870-74	임	912.0	40	사방댐	"	40	2022
부안	상서	가오	870-75	임	7,636.0	103	사방댐	"	103	2022
부안	상서	가오	870-59	전	1,449.5	265	사방댐	"	265	2022
합계			11필지		561,319	2,284			2,284	

전라북도 고시 제2023-1호

2023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2023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시도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전라북도	김제시	지평선 제2일반산단	일반	895	573	김제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3-2호

진안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청(물통합관리과), 진안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진안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3. 1. 6
3. 지정(변경) 사유 : 소하천 및 도로구역 중복구간에 대해 지방하천 폐지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진안천	14개 지구 (좌안 - 4개 지구, 우안 - 10개 지구)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50-96번지선 (No.7+04)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50-68번지선 (No.0+00)	0.704	30,358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162-127번지선 (No.33+16)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50-96번지선 (No.7+04)	2.612	106,945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26-7번지선 (No.52+90)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162-127번지선 (No.33+16)	1.974	38,125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00-27번지선 (No.62+22)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26-7번지선 (No.52+90)	0.932	16,784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좌안부 소계			6.222	192,212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진안천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93-6번지선 (No.7+04)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301-24번지선 (No.0+00)	0.704	21,877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42-1번지선 (No.12+00)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93-5번지선 (No.7+04)	0.496	13,828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94-1번지선 (No.20+00)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42-1번지선 (No.12+00)	0.800	31,023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94-8번지선 (No.21+00)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94-1번지선 (No.20+00)	0.100	3,117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419-3번지선 (No.37+80)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94-8번지선 (No.21+00)	1.680	61,459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56-3번지선 (No.42+20)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418번지선 (No.37+80)	0.440	7,019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55-1번지선 (No.44+00)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56-3번지선 (No.42+20)	0.180	7,328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32-1번지선 (No.55+50)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52-1번지선 (No.44+00)	1.150	20,865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43-1번지선 (No.56+70)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32-1번지선 (No.55+50)	0.120	3,778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5번지선 (No.62+22)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00번지선 (No.56+70)	0.552	13,874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우안부 소계			6.222	184,168	10개 지구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3호

진안천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진안천 지방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공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전라북도(물통합관리과), 진안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진안천 지방하천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 2023. 1. 6
3. 폐천부지의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162-215 외 17필지
4. 폐천부지의 종류 및 면적

하천명	지목	구분	계	관리계획	발생사유
운월천	계	필지수(EA)	18		
		폐천면적(m ²)	6,627		
	도	필지수(EA)	12	보전 (국도 및 소하천 등)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폐천면적(m ²)	3,954		
	천	필지수(EA)	6	보전 (국도 및 소하천 등)	소하천 등 중복구간 폐지
		폐천면적(m ²)	2,673		

- 첨부 열람서류 : 1. 폐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폐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5호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치 인가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고창군수
 - 나.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 사업목적 : 생활하수 등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459-20번지 일원
 - 나. 면 적 : 35,283㎡ (당초 34,427㎡)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가. 종 류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나. 명 칭 :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 다. 용 량 : 21,000㎥/일 (당초 16,000㎥/일, 증설 5,000㎥/일)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주진천 구역
 - 예정 하수처리구역 : 4.218km²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7. 사업시행기간 : 2020 ~ 2024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 붙임 참조
9. 기 타 : 관계서류(계획도면, 토지조서 등)는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063-560-899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 고
					주 소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계			35,283	35,283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871	잡	16,477	16,477	-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871-1	잡	930	930	-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909	잡	16,606	16,606	-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998-13	구	1,270	1,270	-	농림수산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점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 711호선, 김제 석동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점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m)
기정	지방도	711	부량~용안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일원	8,073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산 85-1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760-4	-	140
변경	지방도	711	부량~용안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일원	8,799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산 85-1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760-4	-	140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선형 불량구간 정비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공항철도과(063-280-4404)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7)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11	노선명	부량 ~ 용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산85-1 ~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760-4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	9	주간선도로	8,652	성덕면 석동리 산85-1도	성덕면 석동리 760-4도	일반 도로	-	전북고시 제2011-167호 (2011.06.10.)	지방도 711호선
변경	소로	2	7	9*9.5	주간선도로	8,652 (140)	성덕면 석동리 산85-1도	성덕면 석동리 760-4도	일반 도로	-	전북고시 제2011-167호 (2011.06.10.)	지방도 711호선

※ () : 금회 지방도711호선 위험도로 개선 구간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7 호선	소로 2-7 호선	• 일부 선형변경 -연장 : 140m (일부 선형개량) -폭원 : 9.5m (일부 구간확폭)	• 본 사업은 지방도711호선 김제 석동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향상과 교통안전사고의 사전방지, 차량통행 및 보행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물동량 수송을 위한 지역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전라북도(도로교통과)에서 열람 가능

【 불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12,446	8,073	8,799	증)726		
1	김제	성덕	석동	781-6	도	-	223	225	증)2	국	국
2	김제	성덕	석동	764-3	전	231	-	231	증)231	성덕리 157	강관조
3	김제	성덕	석동	764-4	도	33	-	33	증)33	성덕리 157	강관조
4	김제	성덕	석동	763-4	도	10	-	10	증)10	성덕리 174	최규섭
5	김제	성덕	석동	763-5	도	56	-	56	증)56	성덕리 174	최규섭
6	김제	성덕	석동	763-3	답	1,008	-	372	증)372	성덕리 172	안순례
7	김제	성덕	석동	762-3	답	823	-	22	증)22	석동리 500	곽복렬
8	김제	성덕	석동	775-7	도	66	52	52	-	국(건설교통부)	국
9	김제	성덕	석동	775-2	도	3	3	3	-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329	유택수
10	김제	성덕	석동	772-4	도	55	55	55	-	국(건설교통부)	국
11	김제	성덕	석동	772-2	도	23	23	23	-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329	유택수
12	김제	성덕	석동	794-2	도	328	166	166	-	국(건설교통부)	국
13	김제	성덕	성덕	86-2	도	1,488	133	133	-	대목리 823	이화옥
14	김제	성덕	성덕	86-5	도	740	151	151	-	국(건설부)	국
15	김제	성덕	성덕	산109-4	임	199	17	1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1로 70,1007동 1602호 (삼송동일스위트2차)	홍혜수 외 4인
16	김제	성덕	성덕	산109-10	구	95	95	95	-	국(농어촌공사)	국
17	김제	성덕	성덕	산140-9	구	119	94	94	-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55 109동 304호 (중화산동2가,코오롱 하늘채아파트)	최기호
18	김제	성덕	성덕	산84-1	도	694	687	687	-	국(건설부)	국
19	김제	성덕	성덕	산85-1	도	1,700	1,700	1,700	-	국(건설부)	국
20	김제	성덕	성덕	87-1	도	20	20	20	-	진봉면 고사리	최정호
21	김제	성덕	석동	764-2	도	797	797	797	-	묘라리 641	임기진
22	김제	성덕	석동	764-5	도	374	374	374	-	성덕리 157	강관조
23	김제	성덕	석동	763-2	도	701	701	701	-	국(건설교통부)	국
24	김제	성덕	석동	763-6	도	329	329	329	-	국(건설부)	국
25	김제	성덕	석동	762-2	도	572	572	572	-	석동리 500	곽복렬
26	김제	성덕	석동	762-6	도	300	300	300	-	국(건설부)	국
27	김제	성덕	석동	760-2	도	417	417	417	-	성덕리 608	이주신
28	김제	성덕	석동	760-4	도	279	279	279	-	국(건설부)	국
29	김제	성덕	석동	762-4	도	56	56	56	-	석동리 500	곽복렬
30	김제	성덕	석동	752-2	도	7	7	7	-	국(건설교통부)	국
31	김제	성덕	석동	752-19	도	41	41	41	-	국(건설부)	국
32	김제	성덕	석동	752-18	도	42	42	42	-	국(건설부)	국
33	김제	성덕	석동	761-1	도	66	66	66	-	국(건설부)	국
34	김제	성덕	석동	761-2	도	179	179	179	-	국(건설부)	국
35	김제	성덕	석동	761-3	도	142	142	142	-	국(건설부)	국
36	김제	성덕	석동	751-2	도	377	276	276	-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282	노승택
37	김제	성덕	성덕	91-2	도	76	76	76	-	국(건설부)	국

전라북도 고시 제202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국도	제13호	완도 ~ 금산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347-1 일원	32,006	대강면 옥택리 347-1	대강면 수흥리 530-3	-	1.19
변경	국도	제13호	완도 ~ 금산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347-1 일원	37,366 (증5,360)	대강면 옥택리 347-1	대강면 수흥리 530-3	-	1.19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기능 향상(도로폭 확장)을 통해 이용 편의 제공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1. ~ 2025. 12.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공항공정서과(063-280-4404)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4)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13	노선명	완도 ~ 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347-1 ~ 대강면 수흥리 530-3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27	9	주간선도로	12,961	소로1-901 대강면 풍산리 655-1도	방산리 경계 대강면 방산리 561-17천	일반도로	대강면사무소	전라북도 고시 제-200호 (2010.08.13)	비도시지역 국도13호선
변경	소로	2	927	9 (9.5~12.75)	주간선도로	12,961 (1,188)	소로1-901 대강면 풍산리 655-1도 (대강면 옥택리 347-1)	방산리 경계 대강면 방산리 561-17천 (대강면 수흥리 530-3)	일반도로	대강면사무소 (수흥보건소)	-	국도 제13호선 (남원대강수흥 오르막차로 설치사업)

* ()는 금회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되는 사항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927	소로 2-927	◦ 도로폭 변경 오르막차로 설치	◦ 위임국도13호선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소로 2-927호선 도로폭 변경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실 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라북도 (도로공항철도과)에서 열람 가능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분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면/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총 계			119,131	32,006	증)5,360	37,366			
1	대강옥택	694	도	1,714	222	-	222	국 (건설부)		
2	"	351-1	도	793	-	증)11	11	남원군		
3	"	351-2	도	89	89	-	89	남원군		
4	"	347-1	도	1,061	920	-	920	남원군		
5	"	371-1	도	1	1	-	1	신용진	547	
6	"	369-1	도	56	56	-	56	망박정식치박소사	옥택리	
7	"	369-2	답	648		증)64	64	노갑규	584	
8	"	369-4	도	56	56	-	56	남원군		
9	"	368	전	162	-	증)39	39	노갑규	왕정동92-4 명지아파트6동405호	
10	"	368-1	도	43	43	-	43	남원군		
11	"	365-1	도	12	12	-	12	소방업	옥택리	
12	"	365-2	전	69	69	-	69	강성례	438-1	
13	"	367	전	730	-	증)128	128	신영선	인천 부평구 부평동64-20 대림아파트6/802	
14	"	366	전	922	-	증)197	197	서성현	315	
15	"	363-1	도	30	30	-	30	강성례	438-1	
16	"	363-2	도	1,318	1,318	-	1,318	남원군		
17	"	363-3	전	7	-	증)7	7	강성례	438-1	
18	"	361-1	전	1,306	-	증)506	506	노동현	528	
19	"	362	전	155	-	증)155	155	노해식	옥택리	
20	"	363	전	45	-	증)45	45	강성례	438-1	
21	"	364-1	도	8	8	-	8	신용성	옥택리	
22	"	산105	임	4,760	-	증)120	120	노한규 외2인	509	
23	"	388	도	1,044	683	증)11	694	국(건설부)		
24	"	439-1	도	99	99	-	99	남원군		
25	"	439-2	도	53	53	-	53	남원군		
26	"	685-2	구	3,106	1,165	증)17	1,182	국(농림축산식품부)		
27	"	426-5	도	1,531	1,531	-	1,531	남원군		
28	"	442	전	100	-	증)100	100	노관식	531	
29	"	443	전	1,059	-	증)49	49	노진귀	옥택리	
30	"	443-1	도	29	29	-	29	남원군		
31	"	441-7	도	53	53	-	53	남원군		
32	"	441-5	도	20	20	-	20	유문택 외 1인	430-1	
33	"	446	전	943	-	증)254	254	노기오	517	
34	"	446-1	도	533	533	-	533	남원군		
35	"	446-2	도	77	77	-	77	남원군		
36	"	429-2	도	36	36	-	36	안시량	이백면 남계리	
37	"	428	도	23	23	-	23	남원군		
38	"	428-2	도	55	55	-	55	남원군		
39	"	427-2	도	50	50	-	50	남원군		
40	"	427-1	도	17	17	-	17	남원군		
41	"	426-2	도	7	7	-	7	남원군 외 1인		
42	"	426-1	도	33	33	-	33	남원군 외 1인		
43	"	425-2	도	192	192	-	192	남원군		
44	"	425	도	165	165	-	165	남원군		
45	"	424-2	도	61	61	-	61	남원군		
46	"	424	도	202	165	-	165	신봉관	517	
47	"	447-1	도	17	17	-	17	남원군		
48	"	447-2	답	1,067	-	증)2	2	이동식	남원시 조산동 64-4	
49	"	447-3	도	1,026	1,026	-	1,026	남원군		
50	"	448	전	1,686	-	증)67	67	조동국	성화단길12, 6동507호(왕정동,명지아파트)	
51	"	449	전	764	-	증)109	109	백종택	봉맛길95,102동405호(향교동,향교아파트)	

구분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면/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52	"	산114	임	18,347	-	증)4	4	김해김씨중공파중중	순창군 구립면 구암리 275	
53	"	산115-1	도	979	979		979	남원군		
54	"	산115	임	100	-	증)19	19	평산신씨사목파택촌중중	530-1	
55	"	451-1	도	1,048	1,048	-	1,048	남원군		
56	"	451	답	360	192	증)168	360	양명식	주생면 중동리 682	
57	"	452	답	104	-	증)89	89	노경규	529-1	
58	"	685	구	3,759	32	증)11	43	국(건설부)		
59	"	460	전	751	-	증)312	312	노경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095 성저마을 509/402	
60	"	460-1	도	702	702	-	702	남원군		
61	"	687	도	149	-	증)8	8	국(건설부)		
62	"	461	전	1,279	-	증)4	4	한종남	남원시 주생면 중동길 8-7	
63	"	산5-5	임	91	-	증)91	91	노홍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738-1	
64	"	산5-4	도	1,033	1,033	-	1,033	남원군		
65	"	산4-3	도	1,052	1,052	-	1,052	남원군		
66	"	456-17	도	585	585	-	585	남원군		
67	"	산4-1	임	9,361	-	증)456	456	노경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095 성저마을 509/402	
68	"	456-19	도	2	2	-	2	노길주	518	
69	"	456-18	도	13	13	-	13	남원군		
70	"	456-6	도	876	876	-	876	남원군		
71	"	456-15	전	474	-	증)133	133	노길주	518	
72	"	456-14	전	390	-	증)115	115	노경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095 성저마을 509/402	
73	대강수흥	산86-1	도	974	974	-	974	남원군		
74	"	산86	임	3,968	-	증)266	266	이준학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3	
75	"	산84-1	도	1,398	1,398	-	1,398	남원군		
76	"	산126	도	496	130	증)166	296	국(건설부)		
77	"	688	전	655	-	증)54	54	신인수	남원시 도통동 15-5	
78	"	688-3	도	49	49	-	49	남원군		
79	"	산84	임	288	-	증)193	193	김경록	남원시 도통동 15-5	
80	"	680	도	542	542	-	542	남원군		
81	"	산83-6	도	2,631	2,631	-	2,631	남원군		
82	"	681	전	1,433	-	증)395	395	양규상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26-4	
83	"	967	도	807	776	증)31	807	국(건설부)		
84	"	681-1	도	879	879	-	879	남원군		
85	"	682-2	전	1,419	-	증)133	133	이석민	남원시 대강면 수촌1길 30	
86	"	683	전	128	-	증)1	1	한일량	835-2	
87	"	672-1	도	3,049	3,049	-	3,049	남원군		
88	"	951-19	도	9,264	707	증)1	708	국(건설부)		
89	"	671-1	도	521	521	-	521	남원군		
90	"	산79-1	도	735	735	-	735	남원군		
91	"	668-5	임	860	5	-	5	이조현	732	
92	"	668-3	과	4,944	18	-	18	이조현	732	
93	"	784-3	도	11	11	-	11	이기팔	대강면 수흥리	
94	"	784-4	도	1	1	-	1	한은수	대강면 수흥리 760	
95	"	784-5	도	19	19	-	19	남원군		
96	"	784-2	답	356	-	증)81	81	유동현	남원시 대강면 수흥리 844-2	
97	"	784-1	도	3	3	-	3	이기팔	수흥리	
98	"	783-2	도	13	13	-	13	남원군		
99	"	783-1	전	522	-	증)199	199	유동현	남원시 대강면 수흥리 844-2	
100	"	781	전	424	-	증)309	309	이주형 외1인	755	
101	"	959-4	도	2,337	499	-	499	국(건설부)		
102	"	782	전	766	-	증)100	100	전혜숙	임실군 지사면 원산리 748	
103	"	782-1	도	8	8	-	8	이용현	755	
104	"	775-3	도	1,096	512	-	512	남원군		
105	"	778	전	1,726	-	증)140	140	이재희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16-3	
106	"	530-3	도	7,321	3,098	-	3,098	남원군		

전라북도 고시 제2023-9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순창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순창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1	순창군	반월지구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136번지 일원	
		매우지구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136-3번지 일원	

④ 사업기간 조정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순창군	반월지구, 매우지구	2021년 1월 ~ 2022년 12월	2021년 1월 ~ 2023년 6월	6개월	

⑤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순창군	계	2,015	1,692,760	2,037	1,677,792	22 (1.1%)	△14,968 (-0.9%)	
	반월지구	1,016	775,603	1,048	778,040	32 (3.1%)	2,437 (0.3%)	
	매우지구	999	917,157	989	899,752	△10 (-1%)	△17,405 (-1.9%)	

- ⑥ 변경사유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및 지구계 변경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⑦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순창군청 이 다 연(063-650-1423)
- ⑧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호

갈수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갈수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구분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의 구간								하천 연장 (km)	결정 (변경)일
			기 점				종 점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당초			전북	정읍	고부	입석리 입석1저수지	전북	정읍	고부	강고리 고부천(지방)합류점	5.57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갈수천	지방	전북	정읍	고부	입석리 23-1번지선	전북	정읍	고부	강고리 261-2번지선 고부천(지방)합류점	5.57	2023.01.06.

2. 지정(변경) 사유

하천의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구간의 조사 및 측량 결과에 따른 지정(변경)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호

갈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갈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동진강	갈수천	지방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220번지선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고부천(지방)합류점	7.0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입석1저수지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고부천(지방)합류점	5.57	전라북도 고시 제2011-37호 (2011.02.18.)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23-1번지선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261-2번지선 고부천(지방) 합류점	5.57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갈수천	9.55	12.54	0.0173	0.0530	4.01	2.03	6.04	6.50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갈수천	5.57	5.57	-	11.14	-	10.78	0.36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갈수천	갈수천 종점 (No.0+000)	9.55	50	89	89	-	-
	단산천 합류후 (No.0+870)	8.05	50	86	86	-	-
	단산천 합류전 (No.0+870)	6.62	50	76	76	-	-
	덕연1제수문 지점 (No.2+200)	4.73	50	76	76	-	-
	신중천 합류후 (No.3+335)	3.51	50	76	76	-	-
	신중천 합류전 (No.3+335)	3.40	50	73	73	-	-
	구중교 지점 (No.4+269)	2.08	50	51	51	-	-
	입석2교 지점 (No.5+100)	1.39	50	37	37	-	-
	갈수천 시점 (No.5+570)	0.92	50	25	25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갈수천	0+000	0	89	6.08	50	16	40	4.98	4.98	갈수천 종점
	0+920	920	76	6.42	50	22	40	6.44	5.45	단산천 합류전
	2+200	2,200	76	7.93	50	12	30	8.17	8.16	덕연1제수문 지점
	3+335	3,335	76	10.72	50	12	30	10.89	11.03	신중천 합류전
	4+269	4,269	76	18.71	50	6	20	19.47	19.47	구중교 지점
	5+100	5,100	5,100	43.54	50	13	13	48.34	48.63	입석2교 지점
	5+570	5,570	37	74.04	50	9	9	73.24	74.13	갈수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갈수천	0+000~5+570	좌안	복원지구	5.57	128,286
	0+000~5+570	우안	복원지구	5.57	126,100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라북도청 물통합관리과, 정읍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2호

갈수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청(물통합관리과), 정읍시청(건설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갈수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3. 1. 6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갈수천	13개 지구 (좌안 - 6개 지구, 우안 - 7개 지구)		11.14	254,386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250번지선 (No.0+440)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237번지선 (No.0+000)	0.44	8,10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305-2번지선 (No.1+120)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267-1번지선 (No.0+440)	0.68	13,93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212번지선 (No.2+840)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136번지선 (No.1+120)	1.72	33,28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953번지선 (No.3+560)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842번지선 (No.2+840)	0.72	9,22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652번지선 (No.4+240)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861번지선 (No.3+560)	0.68	9,62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273-1번지선 (No.5+570)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433-1번지선 (No.4+240)	1.33	10,195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5.57	84,377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갈수천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182번지선 (No.0+880)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139번지선 (No.0+000)	0.88	45,09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306-1번지선 (No.1+120)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197번지선 (No.0+880)	0.24	5,17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763번지선 (No.1+800)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723번지선 (No.1+120)	0.68	66,04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880번지선 (No.3+320)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774번지선 (No.1+800)	1.52	19,11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449-1번지선 (No.4+240)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890번지선 (No.3+320)	0.92	7,72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333번지선 (No.5+080)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434-1번지선 (No.4+240)	0.84	25,38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23-1번지선 (No.5+570)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399번지선 (No.5+080)	0.49	1,475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5.57	170,009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14호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고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8조, 제11조, 제19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고시명 :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남원 선화사 묘법연화경(南原 善和寺 妙法蓮華經)

- 지정종별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04호
-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274-45번지
- 수량/규모 : 1점(2권 1책)
- 규격 : 가로 17.8cm, 세로 30.0cm
- 시대 : 조선(1436년)
- 소유자(관리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선화사
- 지정 사유
 -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대표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으로 고려본을 포함하여 조선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간행되어 왔다.
 - 남원 선화사 소장본 묘법연화경의 구성은 권수제와 권차는 ‘妙法蓮華經卷第六’으로 권6과 권7이 함께 묶여 있는 목판본 2권 1책으로 110장이며 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본 책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성달생과 성개형제가 서서한 판서본을 바탕으로 정통(正統) 원년(1436년)에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중간한 판본으로 조선 초기 불교판본 및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나.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대상 :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茂朱 大佛里 磨崖三面菩薩坐像)
- 지정종별 및 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85호(2021.7.30.지정)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산38-1
- 문화재보호구역 : 329.6㎡ (붙임 지정면적조서 참조)
-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무주군)
- 지정 사유 : 문화재가 위치한 석기봉 일대 암반과 마애불이 조성된 노두는 절리(joint)가 발달되어 있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등을 통해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등산객 등 인위적·자연적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대상 문화재 및 문화재와 근접한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 : 063-620-6707 / 전송 : 063-620-6173

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 주소: (우)55517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전화 : 063-320-2538 / 전송 : 063-320-2549

붙임 1. “남원 선화사 묘법연화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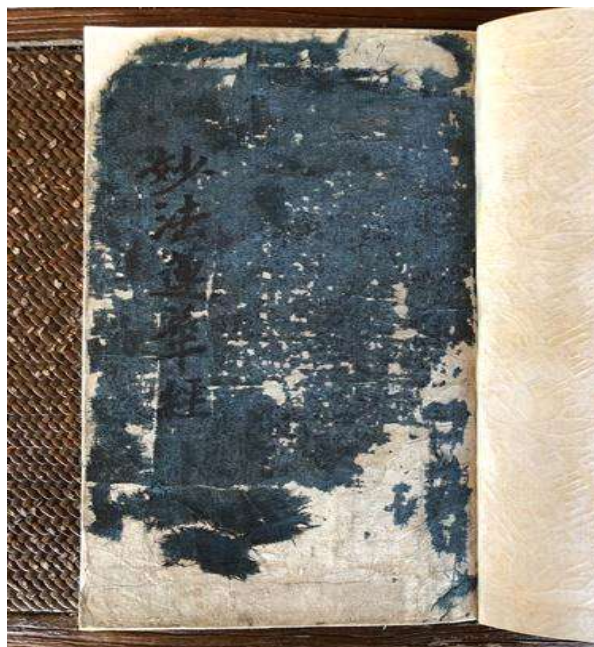
붙임 2.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도면

붙임 1. “남원 선화사 묘법연화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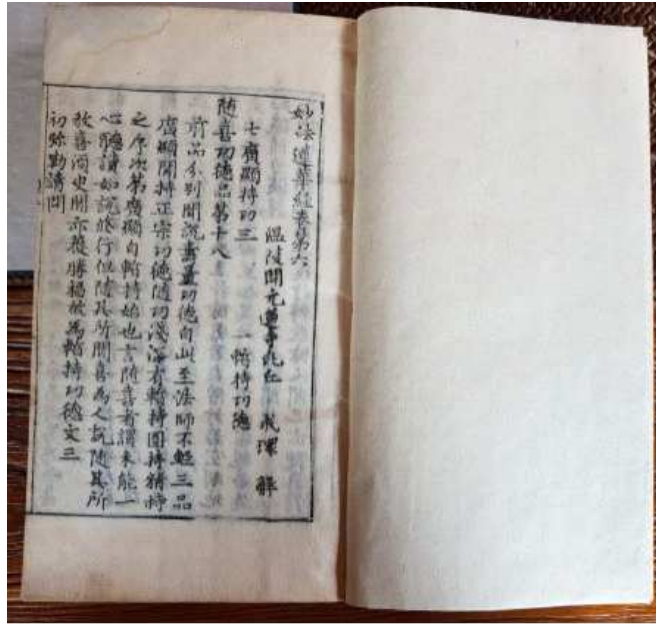
□ 사진



남원 선화사 묘법연화경(겉표지)



남원 선화사 묘법연화경(표지)



남원 선화사 묘법연화경(첫면)



남원 선화사 묘법연화경(간기)

붙임 2.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 보호구역 면적조서 및 도면, 사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문화재가 토지인 경우)

보호구역: 1필지 329.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산 38-1	임	6,058,512	329.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계					329.6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호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 조직개편(2022.10.21.)으로 규제혁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부지사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실효성이 떨어진 부위원장직 개편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 변경(안 제9조제3항제1호)
 -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소관 부지사로 변경(행정부지사 → 경제부지사)
- 나. 부위원장직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부위원장직 지정(기획조정실장) 내용 삭제(안 제9조제3항)
 - 위원장 모두 사고 시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11조제2항)
(부위원장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 다. 인용 상위 규정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 : 2023. 1. 6. ~ 1. 16.(1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화 : 063-280-4142, FAX : 063-280-32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규제혁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4142)

5.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로 한다.

제3조 중 “규칙에”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부지사

제10조제2항 중 “궐위된”을 “공석이 생긴”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개정”을 “제정·개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법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및 공고 문서(고시, 공고 등)</p>	<p>제2조(적용범위) ----- -----.</p> <p>1. (현행과 같음)</p> <p>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p>
<p>제3조(규제심사 청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실·국장등” 이라 한다)은 제2조의 자치법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u>규칙에</u>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제3조(규제심사 청구) ----- ----- ----- ----- ----- <u>규칙에서</u> ----- -----.</p>
<p>제9조(설치·기능)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p> <p>1. 행정부지사</p> <p>2. (생 략)</p> <p>④·⑤ (생 략)</p>	<p>제9조(설치·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2명----- -----.</p> <p>③ ----- 된다.</p> <p>1. 경제부지사</p> <p>2.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p>	<p>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고 등으로 <u>궐위된</u>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u>잔여</u>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p>	<p>② ----- <u>공석이 생긴</u> ----- ----- <u>남은</u>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전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p>	<p>④ ----- -----.</p>
<p>1. 심사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u>제·개정</u>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p>	<p>1. ----- <u>제정·개정</u>-----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⑤·⑥ (생략)</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부위원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 -----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u>-----.</p>

붙임 1

관계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 조직개편('22.10.21.)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지방행정7급 양현진(280-4142)

참고

조례 일부개정 전문(안)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법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조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칙 <개정 2022. 3. 11.>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및 공고 문서(고시, 공고 등)

제3조(규제심사 청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업무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심사 청구될 안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업무부서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된 규제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심사 청구된 규제심의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국장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 또는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등은 안

건을 수정하여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실·국장등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실·국장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설치·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과 규제개혁 협력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부지사

2.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규칙으로 정하는 도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

는 사람

다.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에서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고 등으로 공석이 생긴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심사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도지사가 지정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의 구성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소관 업무의 분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③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7조(민간단체와의 협력) ① 도지사는 규제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도의 우수 부서, 시·군, 도·시·군 소속 공무원 또는 도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2-1998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특장차협회
2. 대 표 자 : 최길호(1961.06.01.)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44
4. 주된 사업
 - 가. 공동 마케팅(시장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 나. 기술 애로 해소지원 사업
 - 다. 회원사간 정보교류 사업
 - 라.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정관변경 허가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제1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특장차협회	사단법인 한국특장차협회	명칭 변경
제4조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마케팅(시장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2. 기술 애로 해소지원 사업 3. 회원사간 정보교류 사업 4.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마케팅(시장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2. 기술 애로 해소지원 사업 3. 회원사간 정보교류 사업 4. 특장제작사 적격업체평가지원 및 인증지원 사업 5.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장차 산업 관련 위·수탁 사업 6. 회원기업 간의 기술융합 협력지원 및 성장 육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 7. 회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금융 및 교육 사업 8.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 추가

6. 변경허가연월일 : 2022. 12. 30.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공인의 등록

-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농생명식품과 공인 각인 내용 수정
-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3년 1월 3일
-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농생명식품과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분임정수관인	
"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농생명식품과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3-23호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완주 대원사 오층석탑(完州 大院寺 五層石塔)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3
- 수 량 : 1기, 문화재구역 147㎡
- 크 기 : 높이 262cm
- 시 대 : 고려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 예고 사유
 - 모악산 대원사는 삼국시대 보덕(普德)의 제자들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탑은 2007년에 혼재되어 쌓아 올린 탑 부재를 7m 정도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복원된 상태이며, 현재 가람 뒤편 높은 단 위에 세워져 있어 가람 내 전각들과 무관하게 조성되어 모악산의 지세를 비보(裨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석탑은 중층의 기단부, 5층의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된 일반적인 석탑형식을 떠나 상륜부와 기단부는 일부 결실됨. 기단 갑석은 경사져 있고, 상층기단의 경우 부연이 생략되었으며, 탑신석은 1층과 2층은 별도의 탑신석을 다듬어 맞추었고, 3층부터 옥개석과 탑신석을 동일석으로 마련함. 옥개받침을 낮은 3단으로 마련하는 등 간략화된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석탑은 전북지역에서는 유례가 많지 않은 신라계 고려 석탑으로서 조형미가 뛰어나고 비보사탑설에 근거하여 조성한 석탑이라는 점에서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음.

나. 문화재 명칭 : 완주 대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일괄 및 복장유물
(完州 大院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十王像一括 및 腹藏遺物)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3
- 수량 : 28구(지장보살삼존상 3구, 시왕상 25구) 및 복장유물

연번	구분	명칭	수량	시대	재질	크기(cm)
1	목조지장 보살삼존상	지장보살좌상(본존)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92.0, 무릎폭 65.0
2		무독귀왕입상(우)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29.5, 어깨폭 35.0
3		도명존자입상(좌)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19.0, 어깨폭 35.0
소계			3구			
4	시왕상	제1진광대왕의좌상(좌1)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39.5, 어깨폭 30.5
5		제2조강대왕의좌상(우1)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1.0, 어깨폭 37.5
6		제3송제대왕의좌상(좌2)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39.0, 어깨폭 38.5
7		제4오관대왕의좌상(우2)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3.0, 어깨폭 37.5
8		제5염라대왕의좌상(좌3)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4.0, 어깨폭 38.2
9		제6번성대왕의좌상(우3)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8.0, 어깨폭 35.0
10		제7태산대왕의좌상(좌4)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6.2, 어깨폭 38.2
11		제8평등대왕의좌상(우4)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2.0, 어깨폭 37.3
12		제9도시대왕의좌상(좌5)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4.3, 어깨폭 39.5
13		제10오도전륜대왕의좌상(우5)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3.0, 어깨폭 43.0
14~15		귀왕상	2구	1688년	나무	左)전체높이 132.5, 右)전체높이 133.0
16~17		판관상	2구	1688년	나무	左)전체높이 128.0, 右)전체높이 130.5
18~19		사자상	2구	1688년	나무	左)전체높이 132.0, 右)전체높이 132.0
20~26		동자상	7구	1688년	흙	전체높이 70.0-81.0
27~28		인왕상	2구	1688년	흙	左) 높이 160.0, 右) 높이 163.3
소계			28구			
1	복장유물	도명존자 발원문	1매	1688년	종이	전체 31.0×158.0
2		후령통	1점			전체 16.0×3.5
3		묘법연화경 권제1	1책	1636년	종이	전체 43.0×26.5
4		묘법연화경 권제1	5책	1654년	종이	전체 42.0×47.0
5		주서다라니	56매		종이	전체 41.5×47.0
6		백지묵서	1매		종이	전체 42.5×74.5
7		백지	13매		종이	전체 40.0×46.5
소계			일괄			
총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등 28구 및 복장유물 일괄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 예고 사유
 - 모악산 대원사는 삼국시대 보덕(普德)의 제자들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원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무독귀왕상, 도명존자상이 있으며, 그 양옆으로 시왕상 10구 귀왕상 2구, 판관상 2구, 사자상 2구, 동자상 7구, 인왕상 2구 등 총 28점이 열지어 있음. 복장물은 발원문, 후령통, 묘법연화경, 다라니, 백지묵서, 백지 등으로 구성됨. 지장삼존상은 비례,

형태, 얼굴의 표현 형식, 착의법 등이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보이며, 나무로 만든 지장삼존상을 제외한 시왕상과 그 권속들은 모두 흙으로 만들었다. 이들 중 도명존자상의 복장에서 1688년에 조각승 도잠(道岑), 지현(智玄), 의영(儀暎) 등이 제작했다는 조성발원문이 발견됨.

- 대상 문화재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조성 시기와 제작자가 밝혀져 17세기 후반 불상 양상은 물론 조각사적으로 기준작품이 될 수 있는 등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음.

3. 지정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나.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 주소 : (우)5535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전화 : 063-290-2096 / 전송 : 063-290-2059

붙임 1. “완주 대원사 오층석탑”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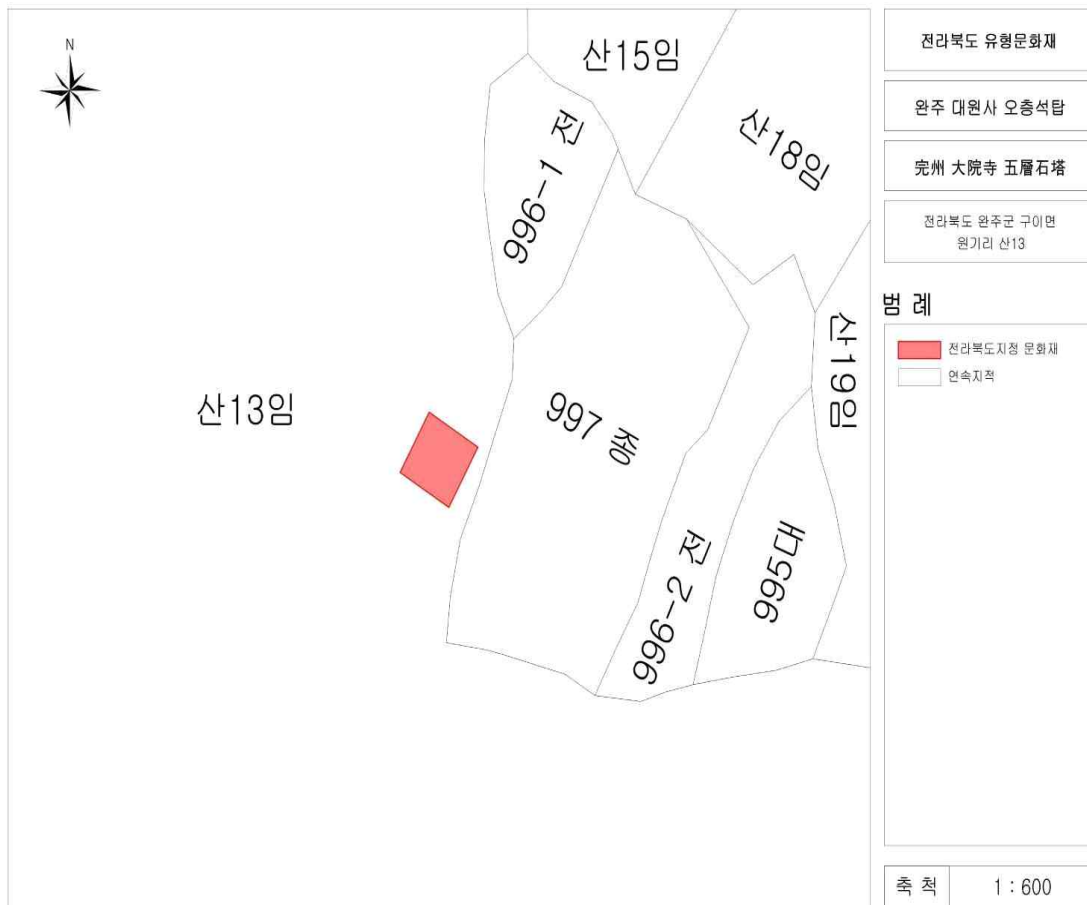
붙임 2. “완주 대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일괄 및 복장유물” 사진, 목록

붙임 1. “완주 대원사 오층석탑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및 사진

□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산13	임	417,521	지정구역 147㎡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99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문화재구역 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의 사용을 금합니다.

□ 문화재 사진



완주 대원사 오흥석탑 위치



완주 대원사 오흥석탑 전경



대원사 오흥석탑 기단부 정면



대원사 오흥석탑 상대감석 하면



대원사 오흥석탑 기단부 사측면



대원사 오흥석탑 상대감석 탑신괴임

붙임 2. “완주 대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일괄 및 복장유물” 사진, 목록



완주 대원사 전경(명부전에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이 안치되어 있음. 복장유물은 별도 보관중)



목조지장보살삼존상(3구)



완주 대원사 시왕상과 권속(좌측편)





완주 대원사 시왕상과 권속(우측편)



□ 완주 대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일괄 및 복장유물 목록

연번	구분	명칭	수량	시대	재질	크기(cm)	사진
1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지장보살좌상 (본존)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92.0, 무릎폭 65.0	
2		무독귀왕입상 (본존에서 우)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29.5, 어깨폭 35.0	
3		도명존자입상 (본존에서 좌)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19.0, 어깨폭 35.0	
4	시왕상	제1 진광대왕의좌상 (좌1)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39.5, 어깨폭 30.5	
5		제2 초강대왕의좌상 (우1)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1.0, 어깨폭 37.5	

연번	구분	명칭	수량	시대	재질	크기(cm)	사진
6		제3 송제대왕의좌상 (좌2)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39.0, 어깨폭 38.5	
7		제4 오관대왕의좌상 (우2)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3.0, 어깨폭 37.5	
8		제5 염라대왕의좌상 (좌3)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4.0, 어깨폭 38.2	
9		제6 변성대왕의좌상 (우3)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8.0, 어깨폭 35.0	
10		제7 태산대왕의좌상 (좌4)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6.2, 어깨폭 38.2	

연번	구분	명칭	수량	시대	재질	크기(cm)	사진
11		제8 평등대왕의좌상 (우4)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2.0, 어깨폭 37.3	
12		제9 도시대왕의좌상 (좌5)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4.3, 어깨폭 39.5	
13		제10 오도전륜대왕의좌상 (우5)	1구	1688년	나무	전체높이 143.0, 어깨폭 43.0	
14~15		귀왕상	2구	1688년	나무	좌전체높이 1325, 우전체높이 1330	
16~17		판관상	2구	1688년	나무	좌전체높이 1280 우전체높이 1305	
18~19		사자상	2구	1688년	나무	좌전체높이 1320, 우전체높이 1320	
20~26		동자상	7구	1688년	흙	전체높이 700-810	

연번	구분	명칭	수량	시대	재질	크기(cm)	사진
							  
27~28		인왕상	2구	1688년	흙	左) 높이 160.0, 右) 높이 163.3	 
소계			28구				
1	복장 유물	도명존자 발원문	1매	1688년	종이	전체 31.0×158.0	
2		후령통	1점			전체 16.0×3.5	
3		묘법연화경 권 제1	1책	1636년	종이	전체 43.0×26.5	
4		묘법연화경 권 제1	5책	1654년	종이	전체 42.0×47.0	
5		주서다라니	56매		종이	전체 41.5×47.0	

연번	구분	명칭	수량	시대	재질	크기(cm)	사진
6		백지묵서	1매		종이	전체 42.5×74.5	
7		백지	13매		종이	전체 40.0×46.5	
소계			일괄				
총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28구 및 복장유물 일괄						

전라북도 공고 제2023-2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사항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에 의하여 도내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6일

등록 번호	분할합병된 법인		분할합병후 존속법인		수리일자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630234	주식회사 진앤준 대표 최병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7	주식회사 헤이앤씨 대표 송준영	전북 군산시 칠성5길 117-11	'23.1.4.

끝.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12. 30.(금) 09:0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 업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1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2. 12. 28.(수) : 특별법안 가결 </div> <p>○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만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독자적인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음. - 그동안 법안 통과까지 노력해준 기획팀, 서울본부 직원들과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국회협력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p> <hr/> <p>○ 2023년 도정 주요업무계획 등 기자회견 준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국장은 내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 및 브리핑을 실시하기 바람. -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이 1월 5일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잘 준비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실·국, 정책기획관 / 협조 : 대변인, 소통기획과)</p> <hr/> <p>○ 연말연시 각종 행사 안전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익산 등 도내 각지에서 제야 및 신년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안전정책과, 소방본부 / 협조 :)</p>

군산시 고시 제2023-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소로1-117호선외3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개정동 516-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1-117호선 외 3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3년 1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동 516-1번지 외 40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나. 명 칭 : 개정동 524-1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소로1-117호선 외 3개노선)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소로 1-117 : B=2~5m, L=208m, A=649m² (일부구간 폭원확장)
 - 나. 소로 1-476 : B=10m, L=108m, A=1,088m² (노선 신설)
 - 다. 소로 1-477 : B=10m, L=125m, A=1,276m² (노선 신설)
 - 라. 소로 2-313 : B=2m, L=39m, A=79m² (일부구간 폭원확장)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40 (마륵동)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식회사 피엘디앤씨 대표 박종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3. 31.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소로 1-117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동	516-1	전	601	5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2	개정동	517-8	답	17	16	군산시					
3	개정동	522-11	답	3	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4	개정동	522-14	답	366	1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5	개정동	522-20	답	165	3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6	개정동	522-21	답	330	7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7	개정동	522-23	답	165	3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8	개정동	522-28	답	165	2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9	개정동	522-29	답	165	2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0	개정동	522-30	답	495	8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1	개정동	522-40	답	165	3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2	개정동	522-43	답	264	1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3	개정동	522-44	답	330	2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4	개정동	522-45	답	264	1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5	개정동	522-46	답	132	1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6	개정동	522-47	답	495	12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7	개정동	532-3	전	488	5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8	개정동	532-29	전	26	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9	개정동	540-6	전	377	1	고*철	군산시 조촌동				
20	개정동	540-21	전	58	4	고*철	군산시 서당길				
계	20필지			5,071	649						

○ 소로1-476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동	524-1	전	1,204	8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2	개정동	524-11	전	2,307	11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3	개정동	524-13	전	557	42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4	개정동	524-15	전	384	38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5	개정동	524-16	전	84	3	고*근	군산시 동아로				
6	개정동	525-11	전	1	1	두*련	군산시 하나운로				
7	개정동	525-12	전	27	27	두*련	군산시 하나운로				
8	개정동	525-13	대	37	37	군산시					
9	개정동	525-14	대	17	1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0	개정동	529-4	전	2	2	고*곤	군산시 사정동				
계	10필지			4,620	1,088						

○ 소로2-31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동	524-2	잡	596	5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2	개정동	524-11	전	2,307	2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계	2필지			2,903	79						

○ 소로 1-477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대 용	
1	개정동	524-1	전	1,204	8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2	개정동	524-13	전	557	13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3	개정동	532-3	전	488	4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4	개정동	532-4	전	1,410	8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5	개정동	532-5	전	1,668	10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6	개정동	532-10	대	233	79	하*심	군산시 하신3길				
						하*란	군산시 두란뚝2길				
7	개정동	532-29	전	26	2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8	개정동	532-30	전	137	13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9	개정동	532-32	전	193	19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10	개정동	532-34	대	42	42	하*심	군산시 하신3길				
						하*란	군산시 두란뚝2길				
11	개정동	532-36	대	3	3	하*심	군산시 하신3길				
						하*란	군산시 두란뚝2길				
12	개정동	533-1	대	203	203	하*심	군산시 하신3길				
						하*란	군산시 두란뚝2길				
13	개정동	533-2	대	52	52	하*심	군산시 하신3길				
						하*란	군산시 두란뚝2길				
14	개정동	538-4	전	27	27	군산시					
15	개정동	540-6	전	377	4	고*철	군산시 조촌동				
16	개정동	540-21	전	58	54	고*철	군산시 서당길				
계	16필지			6,678	1,276						

군산시 고시 제2023-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소로2-577호선외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지곡동 3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2-577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3년 1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1-2번지 외 1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나. 명 칭 : 지곡동 31-27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소로2-577호선 외 1개노선)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소로 2-577 : B=8~13m, L=296m, A=602㎡ (일부구간 폭원확장)
 - 나. 중로 3-21 : B=12m, L=6m, A=93㎡ (가각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65, 14층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선우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 장성환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소로 2-577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31-5	답	716	111	박*철	전북 군산시 미룡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지상권	
						채*석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	지곡동	31-8	답	866	24	박*철	전북 군산시 미룡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지상권	
						채*석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3	지곡동	31-16	답	344	18	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대야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4	근저당권	
4	지곡동	31-26	답	344	20	전*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	지곡동	31-27	답	569	28	전*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				
6	지곡동	31-31	답	410	41	전*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				
						전*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춘길				
						전*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전*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7	지곡동	32-10	대	189	14	주식회사 엘케이도시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2로 15, 404호(용산동, 세안프라자)				
8	지곡동	32-11	대	530	51	주식회사 엘케이도시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2로 15, 404호(용산동, 세안프라자)				
9	지곡동	32-20	답	117	30	주식회사 엘케이도시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2로 15, 404호(용산동, 세안프라자)				
10	지곡동	137-7	구	246	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1	지곡동	137-14	구	376	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2	지곡동	142-5	답	338	45	김*숙	전북 군산시 계산로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근저당권	
						홍*화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지상권	
13	지곡동	142-21	답	760	6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	지곡동	143-2	답	325	127	고*준	전북 군산시 백토로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권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지상권	
계	14필지			6,130	602						

○ 중로 3-21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31-2	답	146	19	전*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				
						전*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전*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전*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	지곡동	31-11	답	46	45	군산시					
3	지곡동	31-13	답	340	29	군산시					
계	3필지			532	93						

군산시 공고 제2023 - 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3-152호선외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비응도동 34번지 도시계획시설(중로3-152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3년 1월 6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비응도동 34번지 내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2) 명 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휴스틸 부지 진출입로 개설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중로 3-152 : B=14m, L=30m, A=437.9m² (노선 신설)
 - 2) 중로 3-153 : B=14m, L=30m, A=437.9m² (노선 신설)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대치동, 신안빌딩 14층)
 - 2) 사업시행자 성명 : 주식회사 휴스틸 대표 박 훈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5.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중로 3-152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비응도동	34	공원	31,949.6	437.9	군산시	-				

○ 중로 3-15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비응도동	34	공원	31,949.6	437.9	군산시	-				

김제시 고시 제2022-132호

김제 성당양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김제시 공고 제2022-215호(2022.03.18.)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공고된 성당양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1월 6일

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주 간 선로	2,450	대로3-12 검산동 796-18	하동 358-18	일반 도로	호남 잠사	건설 제277호 (73.7.3)	
변경	대로	3	2	25	주 간 선로	2,450	대로3-12 검산동 801-1	하동 358-18	일반 도로	호남 잠사		노선 위치, 기점 지면 변경
기정	대로	3	12	25	주 간 선로	2,269	교통광장8	대로1-5	일반 도로		김제시고시 제2017-12호 (17.7.14)	
변경	대로	3	12	25	주 간 선로	2,269	교통광장8	대로1-5	일반 도로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중로	2	4	15~20	보조간선로	1,300	대로3-2 검산동 1123	대로3-12 검산동 131-6	일반 도로		건설 제277호 (73.7.3)	검산3지구
변경	중로	2	4	15~20	보조간선로	1,300	대로3-2 검산동 1123	대로3-12 검산동 131-6	일반 도로			검산3지구,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중로	3	6	12	보조간선로	310	대로3-2 검산동 1049	중로3-8 검산동 1049	일반 도로		전북 제171호 (93.6.14)	
변경	중로	3	6	12	보조간선로	310	대로3-2 검산동 1049	중로3-8 검산동 1049	일반 도로			노선 위치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7	12	보조간선도로	500	대로3-12 검산동 707-3	중로2-4 검산동 1051	일반도로		전북 제171호 (93.6.14)	
변경	중로	3	7	12	보조간선도로	500	대로3-12 검산동 707-3	중로2-4 검산동 1051	일반도로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중로	3	8	12	보조간선도로	430	대로3-12 검산동 711-16	중로2-4 검산동 862-2	일반도로		전북 제171호 (93.6.14)	
변경	중로	3	8	12	보조간선도로	430	대로3-12 검산동 711-16	중로2-4 검산동 862-2	일반도로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소로	2	144	8	국지도로	202	대로3-12 검산동 650-8	검산동 572-6	일반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변경	소로	2	144	8	국지도로	202	대로3-12 검산동 650-8	검산동 951	일반도로			노선 위치, 종점 변경
기정	소로	2	145	5~8	국지도로	170	중로3-8 검산동 678-1	소로2-144 검산동 658-4	일반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변경	소로	2	145	5~8	국지도로	170	중로3-8 검산동 678-1	소로2-144 검산동 951	일반도로			노선 위치, 지점 변경
기정	소로	2	146	8	국지도로	189	중로2-4 검산동 578	소로2-144 검산동 572-8	일반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변경	소로	2	146	8	국지도로	189	중로2-4 검산동 578-17	소로2-144 검산동 572-8	일반도로			노선 위치, 기점 지점 변경
기정	소로	3	199	6	국지도로	170	대로3-2 검산동 824-2	중로3-7 검산동 807-1	일반도로		건설 제44호 (86.1.30)	
변경	소로	3	199	6	국지도로	170	대로3-2 검산동 951	중로3-7 검산동 807-3	일반도로			노선 위치, 기종점 지점 변경
기정	소로	3	238	6	국지도로	130	중로3-7 검산동 805	중로3-8 검산동 678-3	일반도로		건설 제44호 (86.1.30)	
변경	소로	3	238	6	국지도로	130	중로3-7 검산동 805-1	중로3-8 검산동 678-3	일반도로			노선 위치, 기점 지점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3-2	대로3-2	• 노선 위치 및 기점 지점 변경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기점 지점 변경
대로3-12	대로3-12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중로2-4	중로2-4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중로3-6	중로3-6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3-7	중로3-7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중로3-8	중로3-8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소로2-144	소로2-144	• 노선 위치 및 종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종점 지번 변경
소로2-145	소로2-145	• 노선 위치 및 종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종점 지번 변경
소로2-146	소로2-146	• 노선 위치 및 기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기점 지번 변경
소로3-199	소로3-199	• 노선 위치 및 기·종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기·종점 지번 변경
소로3-238	소로3-238	• 노선 위치 및 기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기점 지번 변경

㉒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김제시 공고 제2023-6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4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홈플러스~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변경)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1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검산동 845-1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류 : 김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1-41호선)
 - 나. 명칭 : 홈플러스~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구 분	도로 연장 및 폭원	면 적			비고(사업시행자)
		기 정	변 경	증 감	
1구간	L=129m, B=10m	1,448㎡	1,454㎡	6㎡	김제시
2구간	L=122m, B=10m	1,215㎡	1,215㎡	-	우리자산신탁(주)
합 계		2,663㎡	2,669㎡	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구 분	성 명	주 소	비 고
1구간	김제시장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2구간	우리자산신탁(주) 공동대표이창하,이창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구 분	착수일	준공예정일		비고(사업시행자)
		기 정	변 경	
1구간	2020. 6. 19.	2025. 12. 31.	변경없음	김제시
2구간	2022. 5. 6.	2023. 12. 31.	2025. 12. 31.	우리자산신탁(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8. 열람사항

가.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도시과 (063-540-3919)

다.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라. 의견서 제출 : 관계서류 열람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계	김제시	우리자산 신탁(주)				
	계				3,381	3,237	2,663	(증)6	2,669	1,454	1,215				
1	김제시 검산동	841-8	841-8	대	130	130	115	-	115	115	-	김제시		없음	
2	김제시 검산동	841	841	전	468	468	468	-	468	468	-	김제시		없음	
3	김제시 검산동	845-1	845-1	답	157	157	157	-	157	157	-	김제시		없음	
4	김제시 검산동	846-5	846-8	답	614	470	464	(증)6	470	470	-	전*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9 솔피마을 현대홈타운아파트 ***-***	없음	
5	김제시 검산동	847-49	847-49	전	42	42	42	-	42	42	-	김제시		없음	
6	김제시 검산동	847-46	847-46	전	29	29	29	-	29	29	-	김제시		없음	
7	김제시 검산동	847-47	847-47	전	175	175	174	-	174	158	16	김제시		없음	
8	김제시 검산동	847-48	847-48	전	22	22	22	-	22	3	19	김제시		없음	
9	김제시 검산동	951-12	951-12	도	569	569	48	-	48	12	36	국(건설부)		없음	
10	김제시 검산동	833-11	833-11	임	16	16	14	-	14	-	14	김제시		없음	
11	김제시 검산동	832-7	832-7	전	148	148	141	-	141	-	141	김제시		없음	141/148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7/148
12	김제시 검산동	832-12	832-12	전	23	23	23	-	23	-	23	김제시		없음	
13	김제시 검산동	831-8	831-8	전	31	31	31	-	31	-	31	김제시		없음	
14	김제시 검산동	831-5	831-5	전	109	109	101	-	101	-	101	김제시		없음	
15	김제시 검산동	830-14	830-14	답	103	103	103	-	103	-	103	김제시		없음	
16	김제시 검산동	830-16	830-16	답	165	165	165	-	165	-	165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17	김제시 검산동	830-15	830-15	답	30	30	30	-	30	-	30	김제시		없음	
18	김제시 검산동	830-22	830-22	답	14	14	14	-	14	-	14	김제시		없음	
19	김제시 검산동	830-20	830-20	답	11	11	11	-	11	-	11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20	김제시 검산동	830-21	830-21	답	22	22	22	-	22	-	22	김제시		없음	
21	김제시 검산동	830-23	830-23	답	24	24	24	-	24	-	24	김제시		없음	
22	김제시 검산동	830-13	830-13	답	89	89	89	-	89	-	89	김제시		없음	
23	김제시 검산동	830-24	830-24	답	19	19	19	-	19	-	19	김제시		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리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계	김제시	우리자산 신탁(주)				
24	김제시 검산동	830-17	830-17	답	16	16	16	-	16	-	16	김제시		없음	
25	김제시 검산동	830-18	830-18	답	15	15	15	-	15	-	15	김제시		없음	
26	김제시 검산동	830-19	830-19	답	9	9	9	-	9	-	9	김제시		없음	
27	김제시 검산동	819-9	819-9	답	43	43	43	-	43	-	43	김제시		없음	
28	김제시 검산동	819-10	819-10	답	32	32	32	-	32	-	32	김제시		없음	
29	김제시 검산동	819-6	819-6	답	255	255	241	-	241	-	241	김제시		없음	
30	김제시 검산동	818-5	818-5	전	1	1	1	-	1	-	1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김제시 공고 제2023-21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구간 송유관 이설공사) 공사완료 공고

김제시 고시 제2021-147호(2021.12.10.)로 실시계획인가·고시한 김제 도시계획시설(송유설비)사업인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구간 송유관 이설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1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20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김제 도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송유설비)
 - 나. 명 칭 :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구간 송유관 이설공사
3. 사업면적 및 규모 : 35.3㎡
 - 가. 송유관 이설(D5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전북지사장
 - 나. 주 소 :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216(쌍정리)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1. 12. 10. ~ 2022. 10. 30.
6. 관련도서 : 실음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완주군 고시 제2023-2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축구메카)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축구메카)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1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봉동읍 울소리 6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축구메카)사업
 - 명 칭 : 완주 축구메카 조명탑 신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체육시설 : A=143,780㎡ 중 29,824㎡
 - 규 모 : 조명타워 10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현대자동차(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대로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고창군 고시 제2023-1호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하고 관계 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월 6일

고 창 군 수

①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유원지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165,371.5	-	165,371.5	전북고시 2010-171호 (2010.07.09.)	계획관리 지역

②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1. 총괄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65,371.5	-	165,371.5	100.0	4,604.37	-	4,604.37	6,463.60	증)100.00	6,563.60	
유희 시설	어린이 놀이터	1,316.3	-	1,316.3	0.8	-	-	-	-	-	-	
휴양 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취사장, 야유회장	16,382.0	증)2,186.8	18,568.8	11.2	413.07	-	413.07	473.15	증)100.00	573.15	
특수 시설	식물원	3,439.8	-	3,439.8	2.1	1,033.58	-	1,033.58	1,008.22	-	1,008.22	
편익 시설	일반음식점 및 매점, 일반목욕장	12,944.8	-	12,944.8	7.8	1,263.53	-	1,263.53	1,913.13	-	1,913.13	
관리 시설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장, 관리동	64,232.2	-	64,232.2	38.8	206.00	-	206.00	206.00	-	206.00	
기타 시설	웰빙식품센터, 계류, 벽천, 배수지	15,719.1	증)815.4	16,534.5	10.0	1,688.19	-	1,688.19	2,863.10	-	2,863.10	
녹지 시설		51,337.3	감)3,002.2	48,335.1	29.3	-	-	-	-	-	-	

2. 세부조성계획조서

시설구분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물 면적(㎡)						건축물 높이(층)		비고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용적률산정용)			
총 계			165,371.5	100.0	4,604.37	-	4,604.37	6,463.60	증)100.00	6,563.6(6,175.60)	-	-	
유·회 시설	소 계		1,316.3	0.8	-	-	-	-	-	-	-	-	
	1-1	어린이놀이터	1,316.3	0.8	-	-	-	-	-	-	-	-	
휴·양 시설	소 계		18,568.8	11.2	413.07	-	413.07	473.15	증)100.00	573.15(573.15)	-	-	
	3-1	숙박시설	6,870.0	4.1	362.80	-	362.80	422.88	증)100.00	522.88(522.88)	2	2	
	3-2	야영장1	5,426.5	4.2	-	-	-	-	-	-	-	-	
	3-3	야영장2	5,236.2	3.2	-	-	-	-	-	-	-	-	
	3-4	취사장	137.1	0.1	50.27	-	50.27	50.27	-	50.27(50.27)	1	1	
	3-5	야유회장	899.0	0.5	-	-	-	-	-	-	-	-	
특수 시설	소 계		3,439.8	2.1	1,033.58	-	1,033.58	1,008.22	-	1,008.22(1,008.22)	-	-	
	4-1	식물원	3,439.8	2.1	1,033.58	-	1,033.58	1,008.22	-	1,008.22(1,008.22)	1	1	
편의 시설	소 계		12,944.8	7.8	1,263.53	-	1,263.53	1,913.13	-	1,913.13(1,669.83)	-	-	
	5-1	일반음식점 및 매점	1,799.5	1.1	334.00	-	334.00	434.00	-	434.00(434.00)	2	2	
	5-2	매 점	1,615.1	1.0	300.00	-	300.00	300.00	-	300.00(300.00)	1	1	
	5-3	일반목욕장	9,530.2	5.7	629.53	-	629.53	1,179.13	-	1,179.13(935.83)	2	2	
관리 시설	소 계		64,232.2	38.8	206.00	-	206.00	206.00	-	206.00(206.00)	-	-	
		도 로	23,000.7	13.8	-	-	-	-	-	-	-	-	
	6-1	주차장1	1,191.3	0.7	-	-	-	-	-	-	-	-	
	6-2	주차장2	3,288.4	2.0	-	-	-	-	-	-	-	-	
	6-3	주차장3	10,987.3	6.6	-	-	-	-	-	-	-	-	
	6-4	주차장4	192.4	0.1	-	-	-	-	-	-	-	-	
	6-5	화장실1	312.9	0.2	100.54	-	100.54	100.54	-	100.54(100.54)	1	1	
	6-6	화장실2	321.7	0.2	55.19	-	55.19	55.19	-	55.19(55.19)	1	1	
	6-7	중앙광장	15,192.9	9.2	-	-	-	-	-	-	-	-	
	6-8	진입광장1	2,110.0	1.3	-	-	-	-	-	-	-	-	
	6-9	진입광장2	113.6	0.1	-	-	-	-	-	-	-	-	
	6-10	이벤트광장	2,142.1	1.3	-	-	-	-	-	-	-	-	
	6-11	상징광장	4,599.3	2.8	-	-	-	-	-	-	-	-	
	6-12	잔디광장	640.8	0.4	-	-	-	-	-	-	-	-	
6-13	관리동	138.8	0.1	50.27	-	50.27	50.27	-	50.27(50.27)	1	1		
기타 시설	소 계		16,534.5	10.0	1,688.19	-	1,688.19	2,863.10	-	2,863.10(2,718.40)	-	-	
	7-1	웰빙식품센터	11,558.7	7.0	1,688.19	-	1,688.19	2,863.10	-	2,863.10(2,718.40)	2	2	
	7-2	계 류	2,933.1	1.8	-	-	-	-	-	-	-	-	
	7-3	벽 천	382.7	0.2	-	-	-	-	-	-	-	-	
	7-4	배수지	1,660.0	1.0	-	-	-	-	-	-	-	-	
녹지 시설	8-1	녹 지	48,335.1	29.3	-	-	-	-	-	-	-	-	

3.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 유
①	유원지	◦ 토지이용변경 1. 휴양시설 - 기정 : 16,382.0㎡ , 변경 : 18,568.8㎡ - 증) 2,186.8㎡ 2. 기타시설 - 기정 : 15,719.1㎡ , 변경 : 16,534.5㎡ - 증) 815.4㎡ 3. 녹지시설 - 기정 : 51,337.3㎡ , 변경 : 48,335.1㎡ - 감) 3,002.2㎡ ◦ 건축연면적변경(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기정 : 6,463.6㎡ , 변경 : 6,563.6㎡ - 증) 100.0㎡	◦ 토지의 효율성 증진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해 보다 나은 고창의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과 관광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북분자테마유원지의 조성계획(휴양시설 내 숙박시설 증축 및 배수지 증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2-2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 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본부과)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김제소방서장
2022년 12월 29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김민지(생년월일 : 660311-2*****)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12-20(원천동)

2. 위반내용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미신고

3. 위반법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5. 부과연월일 : 2022. 12. 29.

6. 납부기한 : 2023. 1. 13.

7. 납부방법 : 김제소방서 수입금출납원(전북은행 1013-01-3533103)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40-4241)